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4. 15.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4. 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2. 4. 6.

다. 상정일자: 제25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2. 4. 1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세무1과장 조세원】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22.1.1.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자동차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안 제14조의 2)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동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22.1.1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며, 2022년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2일 상정하였음.

-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이체 등 납부방식에 따라 감면해온 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구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현황

현 행	개 정
제14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 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 원	제14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 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600 원

- 공제 세액은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 동일 생활권이라는 지역특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다면 서울시 자치단체별 균등한 세액결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공제 세액의 확대로 세금의 자동이체¹⁾, 전자송달²⁾ 등의 이용률이 높아져 정확하고 신속한 고지 효과와 그에 따른 납부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

1) 정기분 고지서를 전자 사서함을 통한 메일로 받거나 모바일을 통해 받고자 신청한 납세자에게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고지함.
 2)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거래은행의 계좌나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납부 처리되는 납부 방법

【참고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2021. 12. 2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